

제295회 임시회
2010.10. 20.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0.10.20.(수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5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95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

제1차 교육위원회 : 2010.10. 14.(목)

-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기획관리국장 연희지)

가. 제안이유

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,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충주학생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,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본청 직속기관으로 “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”을 설치하고, 관장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절 신설)
-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충주학생회관을 폐지함(안 별표3)
-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-9번지로 함(안 제1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전문위원 구명회)

본 조례 개정안은

- 충주학생회관을 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관할에서 본청 직속기관인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으로 개편하고, 이와 동시에 동 교육장 관할로 있던 충주학생회관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 변경은 기존의 청주시 상당구 영동 87번지에서 운영하던 학생열람실, 평생학습실 등 업무의 주된 기능이 2010. 9. 1.자로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-9번지로 이전됨에 따라 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따라서, 본 조례 개정안은

-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, 교육여건의 변화에

따라 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,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충주학생회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, 제천학생회관은 교육장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게 되는 필요성 또는 이유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영동 79번지"를 "주중동 511-9번지"로 하고, "주중동 511-9번지"를 "영동 79번지"로 한다.

제3장에 제10절(제31조의4, 제31조의5, 제31조의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절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

제31조의4(설치)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, 소질계발,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,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,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·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·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(이하 "충주학생회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-1번지에 둔다. 다만,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주시 봉방동 11-1번지에 둔다.

제31조의5(관장)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1조의6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2. 도서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
4.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·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
5.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절(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6까지)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(제34조 관련)

명 칭	위 치
제천학생회관	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

둔다.

제31조의5(관장)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1조의6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2. 도서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
4.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·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
5.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10046호)

제32조 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